

경상북도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 2021.09.24.

개정 2021.12.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운동경기부”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운동경기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기인” 이란 경상북도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에 두는 경기종목별 지도자와 그 종목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를 말한다.
2.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9조의 자격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운동경기부에 두는 종목별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 <개정 21.12.28>

제3조(운동경기부 설치 등) ① 우수 체육인의 발굴·육성과 도정홍보 등을 위하여 경상북도체육회에 운동경기부를 두되, 필요하면 운동경기부를 증설하거나 해체할 수 있다.

- ② 운동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주무, 지도자(감독, 코치)와 선수로 구성한다.
- ③ 단장은 경상북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사무처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담당 부서장, 주무는 운동경기부의 담당자로 하되 각각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단장 : 운동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
2. 부단장 : 단장을 보좌하고, 운동경기부 운영 감독
3. 주무 : 운동경기부 실무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4. 지도자 : 부단장의 명을 받아 선수화보, 육성, 훈련, 대회출전, 체력관리, 합숙생활 등을 지도하고, 일일훈련일지, 월별 훈련일지, 대회참가계획서 등을 관리부서에 제출하는 행정 서류를 해당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팀 운영상 플레이인코치(선수 중 경기에 정식 선수로 출전하면서, 소속팀 선수를 지도하는 일을 병행하는 것을 말한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자 또는 종목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단장의 승인 후 플레이인코치를 둘 수 있고, 선수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1.12.28>
5. 선수 : 운동경기부의 소속으로 자긍심을 갖고 팀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훈련에 임하고

대회에 참가하여 경기력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④ 운동경기부의 종목 및 인원(지도자, 선수)은 매년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성한다.
- ⑤ 운동경기부를 신규 창단할 때는 경상북도와 협의 후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⑥ 경상북도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종목 변경, 해체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와 협의 후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개정 21.12.28>

제4조(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 ① 운동경기부의 총괄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경상북도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회」가 담당한다.

제 2 장 임용 및 징계

제5조(임용 및 자격요건) ① 운동경기부의 지도자(감독, 코치)는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지도자로부터 트레이너와 선수 추가 및 중도교체의 요청이 있으면 임용 기준에 따라 회장이 별도로 임용할 수 있다.

- ② 선수는 만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도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용하되, 도내 지역 출신 선수를 우선 채용한다.

구분	자격요건
지도자 (감독, 코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해당 종목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종목 지도자 또는 선수경력 5년 이상인 자○ 만60세 미만인 자
트레이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트레이너 관련 자격 또는 스포츠마사지 등의 자격을 갖춘 자○ 만60세 미만인 자
선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수경력 3년 이상인 자○ 해당 종목 전국체육대회 또는 전국규모대회 입상자○ 경기력 향상 가능성이 있는 자

구분		자격요건
지도자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 해당 종목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종목 지도자 10년 이상 및 선수경력 5년 이상인 자 ○ 만60세 미만인 자 <개정 21.00.00>
	코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 해당 종목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종목 지도자 5년 이상 및 선수경력 5년 이상인 자 ○ 만60세 미만인 자 <개정 21.00.00>
트레이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레이너 관련 자격 또는 스포츠마사지 등의 자격을 갖춘 자 ○ 만60세 미만인 자
선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경력 3년 이상인 자 ○ 해당 종목 전국체육대회 또는 전국규모대회 입상자 ○ 경기력 향상 가능성 있는 자

- 제5조의2(신규채용)** ① 운동경기부 지도자(감독, 코치) 신규채용 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응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의 채용시험은 서류시험, 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 제5조의3(채용공고)** ① 공개경쟁시험을 시행하려면 원서접수 마감일 20일 전(선발예정 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경력경쟁시험을 시행하려면 1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때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② 공고 기간에 초일은 불산입하며, 공휴일은 포함되며, 접수 기간은 가급적 5일 이상 (토·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으로 한다.
- ③ 공개경쟁·경력경쟁시험의 채용공고는 본회·경상북도·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한다.
- ④ 공고 내용은 선발인원, 응모자격, 직무수행 요건, 임용계약 및 지원서 접수,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 및 발표에 관한 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의4(대상자 결정방법)** ① 본회 단장이 정한 응모자의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에 따라 응모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시험을 시행하여 면접시험 대상자를 결정한다.
- ② 서류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원서, 직무수행 계획서, 자기소개서 등을 참고하여 2차 면접 시험을 시행한다. 다만, 면접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면접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최종 적격심사 응모자는 면접시험결과(면접을 시행하지 않을 때는 서류시험 결과에 의함)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 ④ 서류 및 면접시험 시 응모자 1인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로 결정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원별 최고 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의5(심사위원 임명 및 의무) ① 지도자 채용시험에 대한 서류전형 심사는 본회 업무 담당자가 하고, 면접시험 심사위원은 채용 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외부전문위원 3명 이상으로 선정한다.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갖춘 사람

2.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심사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과정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단장은 사전에 심사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 심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응시자인 경우

2. 응시자와 친족 관계들(혈족과 인척)이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근무경험 관계(예시: 동일부서)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심사위원은 채점표를 현장에서 직접 기재하여 서명 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험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단장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제5조2부터 제5조5 이외 채용공고에 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 출자 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의6(정년) ① 운동경기부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지도자 : 만60세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연도 중에 있으면 해당연도 12월 31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5조의7(임용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회 운동경기부 지도자와 선수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10. 스포츠 4대악[조직 사유화, 입시 비리, 승부 조작, (성) 폭력] 관련 판결을 받은 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채용할 수 없다.

제6조(임용서류) 운동경기부에 입단하는 지도자와 선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NO	제출서류	지도자	선수	비고
1	이력서 1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입단 지원서 및 서약서 1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기본증명서 1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병역사항 기재) 각1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6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1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7	자격증(전문스포츠지도사) 사본 1부.	<input type="radio"/>		
8	경기실적증명서 1부.		<input type="radio"/>	
9	경기지도실적증명서 1부.	<input type="radio"/>		
10	이적 동의서 1부.		<input type="radio"/>	
11	중앙경기단체 징계확인서 1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2	그 밖에 체육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제7조(임용 기간) ① 지도자와 선수의 임용은 계약직으로 하고, 계약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량이 우수한 선수는 2~3년으로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전년도 전국체육대회 성적 등을 참고하여 경기력 향상위원회에서 재계약 여부를 심의한 후 회장이 결정하며, 제8조(징계 및 계약해지)에 해당하면 재계약하지 않음을 원칙으

로 한다.

제8조(징계 및 계약해지) ① 회장은 지도자와 선수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징계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1.12.28>

1. 임용된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 규정 제5조의7에 의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2. 운동경기부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체육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3. 전국체육대회 3년 연속 무실적 또는 경기력 향상 가능성의 회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기피하였을 경우
5. 지휘 감독부서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훈련장소를 3회 이상 무단이탈할 경우
6. 질병, 부상, 사고 등으로 선수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7. 특별한 사유 없이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지 않았을 경우
8. 기타 행정상, 재정상 사유로 팀 해체가 불가피하였을 경우
9.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별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10. 운동경기부의 기밀을 누설하여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11. 그 밖의 비위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2 <삭제 21.12.28.>

제8조3 <삭제 21.12.28.>

제8조4(징계절차 및 징계 결정) ① 운동경기부 소속 지도자와 선수에 대한 징계종류, 징계절차, 징계부가금 등에 관하여는 경상북도체육회 정관 제38조에 따라 설치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1.12.28>

- ② 징계에 관한 결정은 경상북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다. <개정 21.12.28>
- ③ <삭제 21.12.28.>

제9조(지휘 감독) 운동경기부의 지휘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운동경기부는 지도자와 선수는 단장의 지휘 · 감독을 받는다.
2. 지도자는 선수 발굴 · 육성과 지도 감독의 책임을 진다.
3. 지도자는 선수들의 복무 및 합숙 생활 관리 등의 책임을 진다. <개정 21.12.28>
4.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지도한다.
5. 지도자는 선수 중에서 주장을 임명하고, 주장은 지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복무

제10조(겸직 금지 및 허가) 운동경기부(지도자와 선수)는 복무 기간 동안 훈련에 전념하여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한하여 단장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

1. 국가 대표 팀 지도자(전임 제외)
2. 중앙경기단체 임원
3. 실업연맹단체의 임원
4. 기타 체육 관계기관의 임원 등

제11조(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 등) ① 근무일은 월요일~토요일까지 주5일 또는 6일로 정할 수 있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6시간 40분,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직장과 선수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1.12.28>

② 휴게시간은 직장과 선수의 합의에 의하여 00:00~00:00(0시간)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1.12.28>

③ 운동경기부는 업무활동(운동) 범위라는 고유의 특성상을 고려하여 선수와 상호 합의 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본회와 대회 사정과 근무여건 등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 이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개정 21.12.28>

④ 본회는 선수동의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1.12.28>

⑤ 업무의 특성상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 시간은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한 제11조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선수대표(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이하같다)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서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개정 21.12.28>

⑥ 제4항에 따른 본회의 지시로 인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외에 선수가 근무 중 연장근로 등을 할 때는 반드시 본회의 승인·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사무처의 승인·동의를 득하지 않고 실시한 임의근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 본회와 선수는 제4항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본회와 선수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보상 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⑧ 운동경기부 지도자는 선수 개인별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유급휴일)** ① 운동경기부 지도자와 선수가 1주 동안의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1주일에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한다. 다만, 주중에 결근이 있는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②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③ 훈련계획 및 대회출전에 따라 연장근로를 한 경우 본회(회장)와 선수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

- 제13조(휴가)** ① 지도자와 선수는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1.12.28>

- ② 근속연수 및 개근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또한 제62조에 따라 본회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같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③ 본회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도자와 선수를 특정 근무일에 휴무하게 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를 같음할 수 있다.
④ 운동경기부 여성지도자 및 선수가 생리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월 1일의 휴가(무급)를 주어야 한다.
⑤ 지도자와 선수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7의 규정을 준용하여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지도자와 선수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병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훈련 및 경기 이외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연간 60일 이내
 2. 공무(훈련 및 경기 중)상 발생한 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때는 연 180일의 범위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3.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4. 휴가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 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한다.

제 4 장 급여 및 기타보상

- 제14조(급여)** ① 운동경기부의 지도자와 선수에게 금전 관련 지급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연봉” 이란 선수단이 연간급여를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한 총금액을 말한다.

2. “급여”에 대한 금액은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20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전날에 지급한다. 단, 매년 1월은 예외로 한다.
3. “퇴직금”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지급한다.
4. 지도자와 선수의 연봉은 별표1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5. 별표1과 같이 동급의 자격 기준을 갖춘 선수단이라 할지라도 개인별 경력 및 성실도, 기여도, 종목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봉의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단, 상위 등급의 금액으로는 조정할 수 없다.
6. 운동경기부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훈련보조비(식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4에 의거 매월 초에 지급한다. <신설 21.12.28>

제15조(우수선수 영입비) ① 경상북도체육회 운동경기부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와 경기력 보강을 위하여 팀별 우수선수 영입비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실업팀 소속으로 국내외 주요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이 있거나 그 가능성이 인정되는 선수를 대상으로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한다.
- ②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 ③ 별표 2와 같이 동급의 자격 기준을 갖춘 선수라 할지라도 개인별 경력과 성실도, 기여도, 종목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선수 영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 ④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 시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고, 선수 개인 은행 계좌로 지급한다.
- ⑤ 우수선수 영입비는 일시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분할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지급을 할 수 있다.
- ⑥ 우수선수 영입비를 받은 선수가 계약 기간만료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남은 일수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우수선수 영입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각종 보험가입) ① 운동경기부의 지도자와 선수의 부상처리를 위하여 예산 안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한다.

- ② 근로계약에 따라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사업주 분담분을 지급한다.

제17조(선수 등록비) 운동경기부 실업연맹 가맹단체규정에 따라 연회비와 선수 등록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훈련 용품 및 피복비 지급) ① 운동경기부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을 운동경기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② 운동경기부의 훈련 및 대회 참가에 필요한 훈련 용품은 팀별 특성에 맞게 운동경기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도자는 운동경기부 주무에게 훈련 용품과 피복이 필요할 경우 구매 요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퇴직금

- 제19조(퇴직금 지급대상)** ① 운동경기부 지도자와 선수가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임용이 없으면 일괄 지급한다.
- ③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6장 훈련 및 대회 참가

- 제20조(훈련계획)** ① 운동경기부 훈련은 상시훈련, 전지훈련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상시훈련

- 운동경기부 훈련장소는 본회에서 정하는 장소 또는 지도자가 정하는 장소로 한다.
- 지도자는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예산에 반영되도록 본회와 협의한다.
- 지도자는 매월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도자는 매월 일일훈련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지도자는 훈련계획의 변경이나 훈련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단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업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전지훈련

- 시기 : 전지훈련 계획에 의하여 시행
- 기간 :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3에 의거 효율적으로 시행
- 전지훈련은 연간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초과할 수 있다.
- 여비 : 개인별로 지급한다.
- 효과 : 정신력 강화, 사기 양양 및 동기유발 등을 통한 경기력 향상
- 결과보고 : 전지훈련 종료 후 7일 이내 전지훈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1조(대회 참가)** ① 운동경기부는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참가계획서를 부단장에게 제출하고 전국규모대회에 참가하며, 대회 종료 후 7일 이내 대회참가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1.00.00>

- ② 대회 참가에 따른 여비는 부단장의 승인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3에 의거 개인별로 지급한다.

③ 지도자는 대회 참가계획의 변경이나 대회 참가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단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업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 7 장 합숙소 설치 운영 및 차량 지원

제22조(합숙소 설치 · 운영) ① 운동경기부 선수 중 타 시 · 도 선수 및 합숙훈련을 해야 하는 종목에 대하여는 합숙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합숙소 운영에 따른 전세금, 월세, 월별 운영비, 공공요금, 난방비 등 필요한 경비는 본회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12월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합숙소 편의를 위한 시설 · 장비 또는 물품 구매는 운동경기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합숙소는 지도자의 책임으로 운영되며, 지도자는 해당 시설 · 장비 및 물품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운동경기부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⑤ 합숙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내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차량 지원) ① 운동경기부 수송을 위하여 차량을 확보 지원하고, 차량 구매 및 임대료와 운영비(유류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차량 구매 및 임차 명의는 “경상북도체육회장”으로 한다.

③ 지도자는 사용 차량에 대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익월 초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12월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차량 임대료와 운영비(유류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발생한 불법 주 · 정차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은 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⑥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차량 손상, 파손, 사고에 대한 과실은 자기 부담한다.

⑦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운동경기부 차량관리 · 운영 운영내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8 장 통 보

제24조(스폰서십제도 운영 등) ① 운동경기부 소속 팀들의 국내외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스폰서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후원업체를 확보할 경우 그 적격성 여부에 대한 내부방침과 후원금액, 적용 범위, 후원계약서 등에 대해 단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경기인은 경상북도체육회와 경상북도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선수활동 이외 광고 선전, 방송 출연 등 일체의 영리활동을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 또는 계산으로 직·간접적으로 하지 않는다.
- ④ 팀별로 후원을 받는 경우 해당 팀의 국내외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장비 구매비 등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동경기부 전체에 대한 후원을 받는 경우는 단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장비, 피복, 음료 등 현물후원의 경우 경상북도체육회에 보고 후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예산은 본회에서 조정한다.
- ⑥ 후원업체의 로고를 경기복 등에 부착할 수 있으나, 경상북도체육회 로고가 주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운동경기부의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팀명 변경은 불가하다.
- ⑦ 후원은 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공공성에 저해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제25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직장운동경기부 복무, 회계, 채용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법」,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경상북도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경상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경상북도 인사관리규정」, 「지방 출자 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을 준용한다.

제26조(서식) 이 규정에 따른 별지 서식과 서식번호는 별표5에 따라 관리한다.

부 칙 (2021.09.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전 운동경기부에 임용된 지도자와 선수는 이 규정의 지도자와 선수 자격요건을 갖추어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자격증 미소지 등 실제 자격 미달자는 1년 이내에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 등 특별한 경우에는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자격요건에 따른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부 칙 (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운동경기부(지도자·선수) 연봉 지급기준

1. 등급표(총괄)

구분	등급	평가점수	연봉액	비고
지도자	S급	95점 이상	80,000천원 이하	
	A급	85점 이상~95점 미만	70,000천원 이하	
	B급	75점 이상~85점 미만	60,000천원 이하	
	C급	65점 이상~75점 미만	50,000천원 이하	
	D급	65점 이하	40,000천원 이하	
선수	S급	95점 이상	100,000천원 이하	
	A급	85점 이상~95점 미만	80,000천원 이하	
	B급	75점 이상~85점 미만	60,000천원 이하	
	C급	65점 이상~75점 미만	50,000천원 이하	
	D급	65점 이하	40,000천원 이하	

※ 해당 등급의 지도자, 선수라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봉이 감액 조정될 수 있음

※ 지도자의 경우 C급으로 임용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정량적 평가는 최근 2년간의 성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가 미개최되어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운동경기부 지도자 및 선수(계속 근무자)
연봉 산정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 기준표

(앞장)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비고
	합계		100점	
정량적 평 가 (70점)	국제대회 (10점)	○ 1위	10점	
		○ 2위	8점	
		○ 3위	6점	
		○ 4위~8위	4점	
	전국체육대회 (40점)	[토너먼트]		
		○ 1위	40점	
		○ 2위	37점	
		○ 4강	33점	
		○ 8강	28점	
		○ 기본	20점	
		[비 토너먼트]		
		○ 1위	40점	
		○ 2위	37점	
		○ 3위	33점	
	전국규모대회 (10점)	○ 4위~6위	28점	
		○ 7위~8위	25점	
		○ 기본	20점	
		[토너먼트]		
		○ 1위	10점	
		○ 2위	8점	
		○ 4강	6점	
		○ 8강	4점	
		[비 토너먼트]		
		○ 1위	10점	
	지도자(선수) 경력 (10점)	○ 2위	8점	
		○ 3위	6점	
		○ 4위~7위	4점	
		○ 10년 이상	10점	
		○ 7년 이상	7점	
		○ 5년 이상	5점	
		○ 3년 이상	3점	
		○ 1~3년 미만	2점	

(뒷장)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비고
정성적 평가 (30점)	업무수행 및 공헌활동	○ 법정의무교육	10점	
		○ 청렴 및 인권교육		
		○ 자기계발 교육		
	사회공헌활동 「재능기부소외 계층봉사 등 (10점)	○ 사회공헌활동 횟수 (1회당 2점) 단, 3회 이상 시행 시 10점	10점	
		[업무 능력 평가] ○ 각종 보고(훈련 및 대회)준수 ○ 훈련일정 및 시간 준수 ○ 지도자와 선수 간 피드백(소통) 여부 ○ 교육 및 행사 참여도 ○ 훈련(연간 30일 이내) 및 대회(연 2회 이상) 참여도		

※ 지도자와 선수(계속 근무자) : 정량적 평가 + 정성적 평가 = 연봉등급 산정

※ 지도자와 선수(신규 임용자) : 정량적 평가 = 연봉등급 산정

(신규 임용자는 정성적 평가를 할 수가 없음 / 정량적 평가 배점 높임)

3. 지도자 및 선수용(계속 근무자) 정량적 평가기준표

(앞장)

평가내용	평가 기준	평점
① 국제대회	○ 국가대표 지도자(선수)로 국제대회 출전하여 1위 입상실적 ※ 경기실적 제출	10점
	○ 국가대표 지도자(선수)로 국제대회 출전하여 2위 입상실적 ※ 경기실적 제출	8점
	○ 국가대표 지도자(선수)로 국제대회 출전하여 3위 입상실적 ※ 경기실적 제출	6점
	○ 국가대표 지도자(선수)로 국제대회 출전하여 4위~8위 입상실적 ※ 경기실적 제출	4점
	※ 경기실적이 많이 있더라도 최고 성적 1개만 반영함	
② 전국체육대회	[토너먼트]	
	○ 전국체전에 출전하여 1위 입상실적	40점
	○ 전국체전에 출전하여 2위 입상실적	37점
	○ 전국체전에 출전하여 4강 입상실적	33점
	○ 전국체전에 출전하여 8강 입상실적	28점
	○ 전국체전에 출전하고, 팀 내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지도자가 추천한 자	20점
	[비 토너먼트]	
	○ 전국체전에 출전하여 1위 입상실적	40점
	○ 전국체전에 출전하여 2위 입상실적	37점
	○ 전국체전에 출전하여 3위 입상실적	33점
	○ 전국체전에 출전하여 4위~6위 입상실적	28점
	○ 전국체전에 출전하여 7위~8위 입상실적	25점
	○ 전국체전에 출전하고, 팀 내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지도자가 추천한 자	20점
	※ 경기실적이 많이 있더라도 최고 성적 1개만 반영함	

(뒷장)

평가내용	평가 기준	평점
③ 전국체육대회	[토너먼트]	
	◦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하여 1위 입상실적	10점
	◦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하여 2위 입상실적	8점
	◦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하여 4강 입상실적	6점
	◦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하여 8강 입상실적	4점
	[비 토너먼트]	
	◦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하여 1위 입상실적	10점
	◦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하여 2위 입상실적	8점
	◦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하여 3위 입상실적	6점
	◦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하여 4위~7위 입상실적	4점
④ 지도자(선수) 경력	※ 경기실적이 많이 있더라도 최고 성적 1개만 반영함	
	◦ 지도자(선수) 경력 10년 이상	10점
	◦ 지도자(선수) 경력 7년 이상	7점
	◦ 지도자(선수) 경력 5년 이상	5점
	◦ 지도자(선수) 경력 3년 이상	3점
	◦ 지도자(선수) 경력 1~3년 미만	2점

4. 지도자 및 선수용(계속 근무자) 정성적 평가기준표

평가내용	평가 기준	평점
① 교육 이수	○ 법정 의무교육(5가지) ○ 청렴 및 인권교육 ○ 자기계발 교육 등	20시간 이상 15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 위 교육 3가지를 합산한 시간을 합산으로 함 ※ 위 교육 3가지 외의 시간도 포함 ※ 평가를 위하여 교육수료증 제출	
② 사회공헌활동 「재능기부, 소외계층봉사 등」	○ 재능기부 팀 종목의 특성을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전파 ○ 소외계층 봉사 등	3회 이상 2회 이상 1회 이상 0회
	※ 사회공헌활동 한 증빙자료 제출	10점 4점 2점 0점
③ 업무수행 등	○ 업무 능력 평가 - 각종 보고 상황(훈련 및 대회) 준수 - 훈련일정 및 시간 준수 - 지도자와 선수 간 피드백(소통) 여부 - 교육 및 행사 참여도 - 훈련(연간 30일 이내) 및 대회(연 2회 이상) 참여도	2점 2점 2점 2점 2점
	업무담당자 평가	

**5. 운동경기부 지도자 및 선수(신규 임용자)
연봉 산정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 기준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비고
	합계			100점
정량적 평 가 (100점)	국제대회 (10점)	○ 1위	10점	
		○ 2위	8점	
		○ 3위	6점	
		○ 4위~8위	4점	
	전국체육대회 (60점)	[토너먼트]		
		○ 1위	60점	
		○ 2위	50점	
		○ 4강	40점	
		○ 8강	30점	
		○ 기본	20점	
		[비 토너먼트]		
		○ 1위	60점	
		○ 2위	50점	
		○ 3위	40점	
	전국규모대회 (20점)	○ 4위~6위	30점	
		○ 7위~8위	25점	
		○ 기본	20점	
		[토너먼트]		
		○ 1위	20점	
		○ 2위	18점	
		○ 4강	16점	
		○ 8강	14점	
	지도자 경력 (10점)	[비 토너먼트]		
		○ 1위	10점	
		○ 2위	8점	
		○ 3위	6점	
		○ 4위~7위	4점	
		○ 10년 이상	10점	
		○ 7년 이상	7점	
		○ 5년 이상	5점	
		○ 3년 이상	3점	
		○ 1~3년 미만	2점	

6. 지도자 및 선수용(신규 임용자) 정량적 평가기준표

(앞장)

평가내용	평가 기준	평점
① 국제대회	○ 국가대표 지도자(선수)로 국제대회 출전하여 1위 입상실적 ※ 경기실적 제출	10점
	○ 국가대표 지도자(선수)로 국제대회 출전하여 2위 입상실적 ※ 경기실적 제출	8점
	○ 국가대표 지도자(선수)로 국제대회 출전하여 3위 입상실적 ※ 경기실적 제출	6점
	○ 국가대표 지도자(선수)로 국제대회 출전하여 4위~8위 입상실적 ※ 경기실적 제출	4점
	※ 경기실적이 많이 있더라도 최고 성적 1개만 반영함	
② 전국체육대회	[토너먼트]	
	○ 전국체전에 출전하여 1위 입상실적	60점
	○ 전국체전에 출전하여 2위 입상실적	50점
	○ 전국체전에 출전하여 4강 입상실적	40점
	○ 전국체전에 출전하여 8강 입상실적	30점
	○ 전국체전에 출전하고, 팀 내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지도자가 추천한 자	20점
	[비 토너먼트]	
	○ 전국체전에 출전하여 1위 입상실적	60점
	○ 전국체전에 출전하여 2위 입상실적	50점
	○ 전국체전에 출전하여 3위 입상실적	40점
	○ 전국체전에 출전하여 4위~6위 입상실적	30점
	○ 전국체전에 출전하여 7위~8위 입상실적	25점
	○ 전국체전에 출전하고, 팀 내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지도자가 추천한 자	20점
	※ 경기실적이 많이 있더라도 최고 성적 1개만 반영함	

(뒷장)

평가내용	평가 기준	평점
③ 전국체육대회	[토너먼트]	
	○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하여 1위 입상실적	20점
	○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하여 2위 입상실적	18점
	○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하여 4강 입상실적	16점
	○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하여 8강 입상실적	14점
	[비 토너먼트]	
	○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하여 1위 입상실적	20점
	○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하여 2위 입상실적	18점
	○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하여 3위 입상실적	16점
	○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하여 4위~7위 입상실적	14점
※ 경기실적이 많이 있더라도 최고 성적 1개만 반영함		
④ 지도자(선수) 경력	○ 지도자(선수) 경력 10년 이상	10점
	○ 지도자(선수) 경력 7년 이상	7점
	○ 지도자(선수) 경력 5년 이상	5점
	○ 지도자(선수) 경력 3년 이상	3점
	○ 지도자(선수) 경력 1~3년 미만	2점

운동경기부(선수) 영입비 지급기준

1. 등급표(총괄)

구분	등급	평가점수	연봉액	비고
선수	S급	95점 이상	100,000천원 이하	
	A급	85점 이상~95점 미만	80,000천원 이하	
	B급	75점 이상~85점 미만	60,000천원 이하	
	C급	65점 이상~75점 미만	50,000천원 이하	
	D급	65점 이하	40,000천원 이하	

※ 해당 등급의 선수라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봉이 감액 조정될 수 있음

※ 정량적 평가는 최근 2년간의 성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가 미개최되어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운동경기부(선수)

영입비 산정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 기준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비고
	합계		100점	
정량적 평가 (100점)	국제대회 (10점)	○ 1위	10점	
		○ 2위	8점	
		○ 3위	6점	
		○ 4위~8위	4점	
	전국체육대회 (60점)	[토너먼트]		
		○ 1위	60점	
		○ 2위	50점	
		○ 4강	40점	
		○ 8강	30점	
		○ 기본	20점	
		[비 토너먼트]		
		○ 1위	60점	
		○ 2위	50점	
		○ 3위	40점	
적	전국규모대회 (20점)	○ 4위~6위	30점	
		○ 7위~8위	25점	
		○ 기본	20점	
		[토너먼트]		
		○ 1위	20점	
		○ 2위	18점	
		○ 4강	16점	
		○ 8강	14점	
	선수경력 (10점)	[비 토너먼트]		
		○ 1위	10점	
		○ 2위	8점	
		○ 3위	6점	
		○ 4위~7위	4점	
		○ 10년 이상	10점	
		○ 7년 이상	7점	
		○ 5년 이상	5점	
		○ 3년 이상	3점	
		○ 1~3년 미만	2점	

3. 선수용 영입비 정량적 평가기준표

(앞장)

평가내용	평가 기준	평점
① 국제대회	○ 국가대표 지도자(선수)로 국제대회 출전하여 1위 입상실적 ※ 경기실적 제출	10점
	○ 국가대표 지도자(선수)로 국제대회 출전하여 2위 입상실적 ※ 경기실적 제출	8점
	○ 국가대표 지도자(선수)로 국제대회 출전하여 3위 입상실적 ※ 경기실적 제출	6점
	○ 국가대표 지도자(선수)로 국제대회 출전하여 4위~8위 입상실적 ※ 경기실적 제출	4점
	※ 경기실적이 많이 있더라도 최고 성적 1개만 반영함	
② 전국체육대회	[토너먼트]	
	○ 전국체전에 출전하여 1위 입상실적	60점
	○ 전국체전에 출전하여 2위 입상실적	50점
	○ 전국체전에 출전하여 4강 입상실적	40점
	○ 전국체전에 출전하여 8강 입상실적	30점
	○ 전국체전에 출전하고, 팀 내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지도자가 추천한 자	20점
	[비 토너먼트]	
	○ 전국체전에 출전하여 1위 입상실적	60점
	○ 전국체전에 출전하여 2위 입상실적	50점
	○ 전국체전에 출전하여 3위 입상실적	40점
	○ 전국체전에 출전하여 4위~6위 입상실적	30점
	○ 전국체전에 출전하여 7위~8위 입상실적	25점
	○ 전국체전에 출전하고, 팀 내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지도자가 추천한 자	20점
	※ 경기실적이 많이 있더라도 최고 성적 1개만 반영함	

(뒷장)

평가내용	평가 기준	평점
③ 전국체육대회	[토너먼트]	
	◦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하여 1위 입상실적	20점
	◦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하여 2위 입상실적	18점
	◦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하여 4강 입상실적	16점
	◦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하여 8강 입상실적	14점
	[비 토너먼트]	
	◦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하여 1위 입상실적	20점
	◦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하여 2위 입상실적	18점
	◦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하여 3위 입상실적	16점
	◦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하여 4위~7위 입상실적	14점
※ 경기실적이 많이 있더라도 최고 성적 1개만 반영함		
④ 지도자(선수) 경력	◦ 지도자(선수) 경력 10년 이상	10점
	◦ 지도자(선수) 경력 7년 이상	7점
	◦ 지도자(선수) 경력 5년 이상	5점
	◦ 지도자(선수) 경력 3년 이상	3점
	◦ 지도자(선수) 경력 1~3년 미만	2점

[별표 3]<개정 21.12.28.>

전지훈련비 및 대회출전비 지원기준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1일)
전지훈련 및 대회출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비 : 20,000원 × 1일 = 20,000원◦ 숙박비 : 40,000원 × 1일 = 40,000원◦ 일비 : 20,000원 × 1일 = 20,000원◦ 교통비 : 20,000원 × 2회(왕복) = 40,000원 (정액 지급) <p>※ 차량 제공 팀은 일비 10,000원 ※ 전지훈련비와 대회출전비는 개인별 지급</p>	80,000원

[별표 4]<신설 21.12.28.>

훈련보조비(식비)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비고
훈련보조비 (식비)	정액 식비 140,000원	

※ 운동경기부 선수단(지도자, 선수)에는 훈련보조비(식비)를 매월 14만원을 지급한다.

[별표 5]<개정 21.12.28.>

별지 서식 목록

연번	서식번호	서식명
1	제1호	근로계약서
2	제2호	이력서
3	제3호	입단 지원서 및 서약서
4	제4호	이적 동의서
5	제5호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서
6	제6호	휴가신청서
7	제7호	근무상황부
8	제8호	월별 운영 계획서
9	제9호	일일훈련일지
10	제10호	대회 참가계획서
11	제11호	대회 참가 결과 보고서
12	제11-1호	항목별 집행 증빙서1(숙박비)
13	제11-2호	00팀 대회 참가 숙박명부
14	제11-3호	항목별 집행 증빙서2(식비)
15	제11-4호	항목별 집행 증빙서3(일비)
16	제11-5호	대회 참가 사진대지
17	제12호	전지훈련 계획서
18	제13호	전지훈련 결과 보고서
19	제13--1호	항목별 집행 증빙서1(숙박비)
20	제13--2호	00팀 전지훈련 참가 숙박명부
21	제13--3호	항목별 집행 증빙서2(식비)
22	제13--4호	항목별 집행 증빙서3(일비)
23	제13--5호	전지훈련 참가 사진대지
24	제14호	월별 차량운행일지
25	제15호	월별 차량유류비 사용명세서
26	제16호	물품 검수(사) 조서
27	제16-1호	물품 검수 사진
28	제17호	00팀 훈련 용품 수령 확인증
29	제18호	사직서
30	제19호	응시원서(채용서류)
31	제19-1호	응시원서 작성요령
32	제20호	이력서(채용서류)
33	제20-1호	이력서 작성요령
34	제21호	자기소개서(채용서류)
35	제22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채용서류)
36	제23호	00팀 운영능력 계획서(채용서류)
37	제24호	훈련 장비(자산취득) 관리 대장

* [별지제1호서식] 표준계약서의 내용과 관련된 규정이나 법령의 변경 등이 있어 계약당사자 상호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식의 일부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1.12.28.>

경상북도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근로계약서

[경상북도체육회] 이하 “직장운동경기부” 라 한다.

[경상북도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_____(이하 “선수” 이라 한다)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가 선수로서 선수활동을 하고, 직장운동경기부는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 등 금품을 지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 간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의거하여 전문체육 선수와 지도자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부로서,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 제2조 제13호에 따라 전문선수 및 지도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 ② “선수”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전문선수로 등록한 자로서, 직장운동 경기부와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적용범위)

- ① 계약 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하며, 본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의 모든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대회 규정, 직장운동경기부 구성 요건, 선수 자격 등 대회 참가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약관 또는 계약을 규정(경기인 등록규정 등)하여야 하는 경우, 본 계약보다 해당 약관 또는 계약이 우선한다.

(확인: 선수 _____ 서명)

제4조(담당업무 및 선수활동의 범위)

- ① 선수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각종 직장운동경기부 대회 참가
 2.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훈련 참가
 3.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광고 및 미디어 출연 등 영리활동

4.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부대 활동(단,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광고 및 홍보 활동, 사회봉사 및 공익 협찬, 팬서비스 활동, 시상식 등 제1호 및 2호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근무지(근무 장소): _____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선수활동 범위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부속 합의서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무일은 월요일~토요일까지 주 6일로 정하고 근무시간은 _____시_____분부터 _____시_____분까지로 한다.

② 휴게시간은 ____시 부터 ____시(____시간)로 하며 중식 시간을 포함한다.

③ 선수 담당업무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와 상호 합의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대회 사정 및 근무여건 등에 따라 이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 동의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내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업무의 특성상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 시간은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한 표준계약서 제5조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선수 대표(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근로자 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로 인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외에 선수가 근무 중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동의를 득하지 않고 실시한 임의근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확인: 선수 _____ 서명)

⑦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제4항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직장운동 경기부와 선수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확인: 선수 _____ 서명)

제6조(유급휴일)

① 선수가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일요일)을 1주일에

1일씩 부여한다. 다만 주중에 결근이 있는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② 근로자의 날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상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유급휴 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직장운동경기부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본 계약서 제4조 제1항 각호의 선수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활동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 대가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사전에 결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상금, 그 외 영리활동 등으로 얻는 수익 중에서 분배의 대상으로 하기로 한 것 등으로 구성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대회 참가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리를 지원한다.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선수로서의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고, 선수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견될 경우 선수의 동의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선수로부터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⑥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다음 각호에 대한 내용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 조작, 심판매수, 부정 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 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선수에게 폭력·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행위 등

제8조(선수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된 후원금, 기타 약정이나 대회 규정에 의한 상금, 기타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 중 선수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수는 자신이나 다른 선수에 대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신체적 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선수는 훈련 활동에 있어서 훈련의 방법이나 훈련설비의 신설 및 교체에 대한 의견을 직장운동경기부에 제시할 수 있다.

④ 선수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선수활동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제4조 제1항의 선수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협의되지 않은 선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선수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 조작, 심판매수, 부정 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 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선수에게 폭력·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소속 또는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행위 등
⑥ 선수는 계약기간 중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본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내의 다른 선수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선수에게 지급한 단체복을 착용 또는 사용을 지시받은 경우 단체복을 착용 혹은 사용하여야 한다. 단,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착용 혹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급여 및 지급방법, 시기 등)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본계약기간 동안 선수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제1항의 급여를 지급한다.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급여액 또는 조건부 상여금 지급의 경우 그 지급조건과 급여가 복수의 지급 사유로 구성될 경우의 그 내역에 대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급여를 제1항에서 정한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건부 상여금이나 지급 사유가 다른 지급액은 그 각 조건이나 지급 사유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④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제4조 제1항의 활동을 하지 아니한 기간(시간)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2(우수선수 영입비 지급)

- ①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5조에 따라 영입비 금_____원(₩_____) 지급시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고, 선수가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에 지급한다.
- ② 우수선수 영입비를 받은 선수가 계약 기간 만료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남은 일수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우수선수 영입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영리활동)

선수의 영리활동 참가로 인해 직장운동경기부가 수익을 얻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그 수익에 대하여 분배 여부 및 분배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다.

제11조(비용의 부담 등)

-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권한 범위 내에서 선수의 선수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선수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선수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② 대회 활동으로 인한 상금 혹은 영리활동에 대한 금품 지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경우, 직장운동경기부는 상금 혹은 영리활동을 통한 금품을 지급과 동시에 금품의 산정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선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제12조(사회보험 등의 공제)

-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세 및 주민세 등 법령이 정하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의 요청에 의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후 발생하는 법적 분쟁으로 인한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소급분 및 가산금에 대하여는 선수가 이를 부담한다.

제13조(지식재산권 등)

-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 중 선수의 본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선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작성한 저작물,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직장운동경기부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선수의 선수활동 또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별도 합의를 통하여 계약 기간 동안 지식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지식재산권의 생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선수와 합의를 통해 계약 종료 후에도 선수로부터 동의를 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선수의 명예나 기타 선수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연차유급휴가)

- ① 근속연수, 출근율 및 개근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수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특정 근무일에 휴무하게 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
- ③ 위 규정된 사항 외에 연차유급휴가와 기타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직장운동경기부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계약내용의 변경)

- ①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 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 ② 변경된 계약서는 변경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6조(권리 등의 양도)

직장운동경기부는 권리 등의 양도가 발생하기 이전에 선수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선수와 합의를 거쳐(또는 선수의 동의를 받아) 본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일부양도에는 선수와의 권리의무관계는 양도인에게 여전히 귀속하는 임대를 포함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 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실상 파산,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2. 선수가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직장운동경기부의 정당한 지시에도 선수가 지속적으로 불응하거나 선수의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선수가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 ②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선수는 어느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1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죄고하고, 위 기간 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③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선수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제1항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8조(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선수가 선수활동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거나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명백히 선수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단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잔여 급여 일부 혹은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비밀유지)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 기간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20조(분쟁해결)

-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선수와 직장운동경기부가 상호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 ③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처리한다.

제21조(부속 합의)

- 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

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6조에 따른 계약 내용의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22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상호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경상북도체육회(사용자)	
주소	
회사명	
대표자	(인)

선수(근로자)	
주소	
생년월일	
성명	(인)

경상북도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감독, 코치, 트레이너, 플레잉코치) 근로계약서

[경상북도체육회] 이하 “직장운동경기부” 라 한다.

[경상북도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_____] 이하 “지도자(감독, 코치,
트레이너, 플레잉코치” 이라 한다)

직장운동경기부와 지도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지도자가 지도자로서 지도자활동을 하고, 직장운동경기부는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 등 금품을 지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지도자 간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직장운동경기부” 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의거하여 전문체육 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부로서,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 제2조 제13호에 따라 전문 선수 및 지도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 ② “지도자” 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전문지도자로 등록한 자로서, 직장운동경기부와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적용범위)

- ① 계약 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하며, 본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직장운동경기부와 지도자의 모든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대회 규정, 직장운동경기부 구성 요건, 지도자 자격 등 대회 참가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약관 또는 계약을 규정(경기인 등록규정 등)하여야 하는 경우, 본 계약보다 해당 약관 또는 계약이 우선한다.

(확인: 지도자 _____ 서명)

제4조(담당업무 및 지도자활동의 범위)

- ① 지도자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각종 직장운동경기부 대회 참가

2.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훈련 참가
 3.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선수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4. 선수(팀) 관리에 관한 사항
- ② 근무지(근무 장소) : _____
- ③ 업무상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담당 업무와 제2항의 근무지(근무지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① 근무일은 월요일~토요일까지 주 6일로 정하고 근무시간은 ____시____분부터 ____시____분까지로 한다.
- ② 휴게시간은 ____시 부터 ____시(____시간)로 하며 중식 시간을 포함한다.
- ③ 지도자 담당업무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운동경기부는 지도자와 상호 합의 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대회 사정 및 근무여건 등에 따라 이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지도자 동의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 ⑤ 업무의 특성상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 시간은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한 표준계약서 제5조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지도자 대표(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근로자 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 ⑥ 제4항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로 인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외에 지도자가 근무 중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동의를 득하지 않고 실시한 임의근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확인: 지도자 _____ 서명)
- ⑦ 직장운동경기부와 지도자는 제4항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직장운동 경기부와 지도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확인: 지도자 _____ 서명)

제6조(유급휴일)

- ① 지도자가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일요일)을 1주일에

1일씩 부여한다. 다만 주중에 결근이 있는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② 근로자의 날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상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유급휴 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직장운동경기부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지도자에게 본 계약서 제4조 제1항 각호의 지도자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지도자에게 활동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 대가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사전에 결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상금, 그 외 영리활동 등으로 얻는 수익 중에서 분배의 대상으로 하기로 한 것 등으로 구성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지도자가 대회 참가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리를 지원한다.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지도자가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고, 지도자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견될 경우 지도자의 동의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직장운동경기부는 지도자가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도자로부터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⑥ 직장운동경기부는 지도자에게 다음 각호에 대한 내용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 조작, 심판매수, 부정 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 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선수에게 폭력·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행위 등

제8조(지도자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지도자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된 후원금, 기타 약정이나 대회 규정에 의한 상금, 기타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 중 지도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지도자는 자신이나 선수에 대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신체적 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 ③ 지도자는 훈련 활동에 있어서 훈련의 방법이나 훈련설비의 신설 및 교체에 대한 의견을 직장운동경기부에 제시할 수 있다.
 - ④ 지도자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도자활동을 하여야 하며, 계약 기간 동안 제4조 제1항의 지도자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협의되지 않은 지도자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⑤ 지도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 조작, 심판매수, 부정 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 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선수에게 폭력·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소속 또는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행위 등
 - ⑥ 지도자는 계약기간 중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본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내의 다른 지도자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지도자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지도자에게 지급한 단체복을 착용 또는 사용을 지시 받은 경우 단체복을 착용 혹은 사용하여야 한다. 단,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착용 혹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급여 및 지급방법, 시기 등)

- ① 계약 급여(연봉)는 금 원(₩)으로 하고, 그 지급방법은 직장운동경기부가 매월 20일, 금 원(₩)[주휴수당 포함]을 지도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본계약기간 동안 지도자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제1항의 급여를 지급한다. 직장운동경기부와 지도자는 급여액 또는 조건부 상여금 지급의 경우 그 지급조건과 급여가 복수의 지급 사유로 구성될 경우의 그 내역에 대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지도자에게 급여를 제1항에서 정한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건부 상여금이나 지급 사유가 다른 지급액은 그 각 조건이나 지급 사유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④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제4조 제1항의 활동을 하지 아니한 기간(시간)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영리활동)

지도자의 영리활동 참가로 인해 직장운동경기부가 수익을 얻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와 지도자는 그 수익에 대하여 분배 여부 및 분배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다.

제11조(비용의 부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권한 범위 내에서 지도자의 지도자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지도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지도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대회 활동으로 인한 상금 혹은 영리활동에 대한 금품 지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경우, 직장운동경기부는 상금 혹은 영리활동을 통한 금품을 지급과 동시에 금품의 산정 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지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와 지도자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제12조(사회보험 등의 공제)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세 및 주민세 등 법령이 정하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요청에 의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후 발생하는 법적 분쟁으로 인한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소급분 및 가산금에 대하여는 지도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13조(지식재산권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 중 지도자의 본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선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작성한 저작물,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직장운동경기부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지도자의 지도자활동 또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 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와 지도자는 별도 합의를 통하여 계약 기간 동안 지식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권리를 지도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지식재산권의 생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지도자와 합의를 통해 계약 종료 후에도 지도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지식재산을 사

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지도자의 명예나 기타 지도자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연차유급휴가)

- ① 근속연수, 출근율 및 개근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 휴가를 부여한다.
-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도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특정 근무일에 휴무하게 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
- ③ 위 규정된 사항 외에 연차유급휴가와 기타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직장운동경기부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계약내용의 변경)

- ①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지도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 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 ② 변경된 계약서는 변경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지도자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6조(권리 등의 양도)

직장운동경기부는 권리 등의 양도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도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지도자와 합의를 거쳐(또는 지도자의 동의를 받아) 본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일부양도에는 지도자와의 권리의무관계는 양도인에게 여전히 귀속하는 임대를 포함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 ① 직장운동경기부와 지도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실상 파산,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본 건 계약의 이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2. 지도자가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직장운동경기부의 정당한 지시에도 지도자가 지속적으로 불응하거나 지도자의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도자가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②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지도자는 어느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1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죄고하고, 위 기간 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지도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제1항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8조(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지도자가 지도자활동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거나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명백히 지도자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단 직장운동경기부는 지도자에게 잔여 급여 일부 혹은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비밀유지)

직장운동경기부와 지도자는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20조(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지도자와 직장운동경기부가 상호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③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처리한다.

제21조(부속 합의)

① 직장운동경기부와 지도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6조에 따른 계약 내용의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22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지도자가 상호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경상북도체육회(사용자)	
주소	
회사명	
대표자	(인)

지도자(근로자)	
주소	
생년월일	
성명	(인)

이 력 서

성명	○ 한글:			사진 (3.5cm×4.5cm)			
	○ 漢字:						
주민등록번호	-						
현 주 소	(우() ※ 직접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						
휴대폰			e-mail				
직위	감독 · 코치 · 선수	종목					
병역사항	해당 없음() / 미필() / 복무()						
학력	초	기간	학교명	가족사항	관계	성명	생년월일
	중						
	고						
	대						
주요 대회 입상 경력	기간(년 월)			소속		입상실적	
	.	.	~	.	.()		
	.	.	~	.	.()		
	.	.	~	.	.()		
	.	.	~	.	.()		
수상	년 월 일			종류		시행(발령)	
신체 사항	신장	체중	시력		혈액형		
			•좌:				
			•우:				

입단 지원서 및 서약서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종목 :
- 직위 :

상기 본인은 0000년 경상북도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에 지도자(선수)로 입단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경상북도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에 제출한 이력서, 입단 지원서, 주민등록 및 초본, 경기실적증명서, 각종서류 등의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과 다름이 없음.
2. 경상북도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 근무에 임하며, 관리부서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겠음.
3. 경상북도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의 정보와 비밀 등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경상북도체육회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무단 누설하거나 경쟁사도 및 타 팀에 유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함.
4. 본이 위 각항의 서약을 위반할 시는 경상북도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규정에 따른 조치 및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감수하겠음.

붙임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 초본(병역기재사항 명시) 각1부.
3. 경기실적증명서(지도자 및 선수) 1부.
5. 이적동의서(신규 입단자) 1부.
6. 통장사본(본인명의) 1부.
7.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8.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1부.

년 월 일

서약자 : (인)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이 적 동 의 서

제-호

담당부서	
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 성명 :

○ 생년월일 :

○ 소속 :

상기 선수를 ○○○으로 이적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체육회장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본회가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2항”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합니다.

I.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제공하신 정보는 선수단(지도자, 선수)의 계약 체결 시 급여 및 선수단 관리를 위해 사용합니다.
 - 선수단 관리(급여 등) 및 정보전달 등에 이용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E-Mail, 계좌번호

II.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증명사진, 생년월일, 주민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전화번호(자택, 비상전화), 결혼여부, E-Mail 주소, 신상자료, 학력, 경력, 급여수령계좌, 주민등록등본, 기타 필요사항 등

III.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무처 처무규정 제73조에 의거 영구 보존합니다.

IV. 제3자에 대한 제공 및 공유 등

수집된 개인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상기 개인정보 취득목적에서 고지한 범위를 초과하여 타인(또는 기타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경우와 감독기관이 검사목적으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V.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의 철회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할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의 고지사항을 숙지하였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휴 가 신 청 서

팀 명										
직 위										
휴가종류	1. 연 가 ()	2. 반 가 ()	3. 여름휴가 ()							
	4. 경조휴가 ()	5. 공 가 ()	6. 병 가 ()							
	7. 조 퇴 ()	8. 대체휴일 ()	9. 기타 ()							
	기 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일간)					
사 유										
비상연락처										

위와 같이 휴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자 : 00팀 선수 0 0 0 (인)
- 확인자 : 00팀 감독 0 0 0 (인)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근무상황부

○ 총연기일수 : 일
○ 팀명 :
○ 직위 :
○ 성명 :

NO	종류	기간 또는 일시		사유	연락처	학 본인 지도자		비고
		부터	까지			학 본인 지도자		
1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00팀 0월 운영 계획서

훈련계획

훈련기간	
훈련인원	
훈련장소	
훈련목표	
중점사항	

전지훈련 계획

훈련계획 여부	있음 또는 없음
훈련기간	
훈련인원	
훈련장소	
훈련목적	

대회참가 계획

훈련계획 여부	
대회명	
기간	
장소	
참가인원	
예상참가비	
예상성적	

기타요청 및 건의사항

-

작성일		작성자	직위 : 감독	성명:	(인)
-----	--	-----	---------	-----	-----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00팀 일일훈련일지

 훈련계획

훈련일	년 월 일(요일)	
훈련장소	오전	
	오후	
훈련인원 및 명단	지도자 명	
	선수 명	
불참인원 및 불참사유	지도자 명	- 불참명단 : - 불참사유 :
	선수 명	- 불참명단 : - 불참사유 :
훈련내용	오전 (~)	
	오후 (~)	
전일훈련 결과	- 사고유무 : 있음(), 없음()	
	- 훈련 참가인원 변동 : 있음(), 없음()	
	- 특이사항 (일일훈련계획 변동사항)	
기타사항		

작성일		작성자	직위 : 감독	성명: (인)
-----	--	-----	---------	---------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대회 참가계획서

팀 명			
대 회 명		소요예산	
대회 기간		대회 장소	
파견 기간			
참가인원	○총 명[지도자 : 명 / 선수 : 명]		

대회참가 세부사항	성명	세부종목	예상성적	비고

붙임 1. 대회참가요강 / 붙임 2. 대회참가신청서

기타사항	-			
작성일		작 성 자	직위 : 감독	성명: (인)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대회 참가 결과 보고서

대회 개요

대회명							
대회기간			대회장소				
입상실적	입상 인원		메달 획득	구분	금	은	동
				단체			
				개인			

세부 결과

대회출전비 정산	지원액(원)	지출액(원)	잔액(원)

□ 분석 및 향후 대책

-

작성일		작성자	직위 : 감독	성명:	(인)
-----	--	-----	---------	-----	-----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별지 제11호의1서식]

항목별 집행 증빙서1

▣ 항 목 명 : 숙박비

▣ 기 간 :

카 드 전 표

견 적 서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숙박비영수증의 경우
기간 명시되는 자료
불임요망)

[별지 제11호의2서식]

○○팀 대회 참가 숙박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숙소명(주소 포함)○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별지 제11호의3서식]

항목별 집행 증빙서2

▣ 항 목 명 : 식비

▣ 기 간 :

카 드 전 표

견 적 서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숙박비영수증의 경우
기간 명시되는 자료
불임요망)

항목별 집행 증빙서3

▣ 항 목 명 : 일비

▣ 기 간 :

카 드 전 표

견 적 서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숙박비영수증의 경우
기간 명시되는 자료
불임요망)

[별지 제11호의5서식]

대회 참가 사진대지

대회명		
기간	장소	

대회 사진첨부
(최소 2장)

대회 사진첨부
(최소 2장)

[별지 제12호 서식]

전지훈련 계획서

팀 명	
훈련 명	
소요 예산	
훈련 기간	
훈련 장소	
훈련 인원	
숙소명 (주소/전화번호기재)	

훈련목표	
훈련내용	- - - - - - - -

기타사항	
------	--

작성일		작성자	직위 : 감독	성명: (인)
-----	--	-----	---------	---------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전지훈련 결과보고서

훈련명	
훈련기간	
훈련장소	
훈련명단	
숙소명 (주소/전화번호기재)	

훈련결과	
------	--

분석 및 문제점	
-------------	--

향후 대책	
-------	--

훈련비 정산	지원액(원)	지출액(원)	잔액(원)

작성일		작성자	직위 : 감독	성명: (인)
-----	--	-----	---------	---------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항목별 집행 증빙서1

▣ 항 목 명 : 숙박비

▣ 기 간 :

카 드 전 표

견적서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숙박비영수증의 경우
기간 명시되는 자료
불임요망)

[별지 제13호의2서식]

○○팀 전지훈련 참가 숙박명부

○ 숙소명(주소 포함)	○
○ 연락처	○

항목별 집행 증빙서2

▣ 항 목 명 : 식비

▣ 기 간 :

카 드 전 표

견 적 서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숙박비영수증의 경우
기간 명시되는 자료
불임요망)

항목별 집행 증빙서3

▣ 항 목 명 : 일비

▣ 기 간 :

카 드 전 표

견 적 서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숙박비영수증의 경우
기간 명시되는 자료
불임요망)

[별지 제13호의5서식]

전지훈련 참가 사진대지

대회명		
기간		장소

대회 사진첨부
(최소 2장)

대회 사진첨부
(최소 2장)

[별지 제14호 서식]

0월분 차량운행일지

종목		전월 주행거리	
차량번호		당월 주행거리	

No	월/일	운전자	운행 구간	운행 목적	시간		주행거리		주유 현황		운전자	비고
					출발	도착	운행 거리 (km)	운행 누계 (km)	주유일	금액		
1												
2												
3												
4												
5												
6												
7												
8												
9												
10												
총계												

작성일		작성자	직위 :	성명: (인)
-----	--	-----	------	---------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0월분 차량유류비 사용명세서

종목		차량번호	
----	--	------	--

No	사용 일자	주유소 현황 (상호/주소)	주유량(l)	사용금액	주유횟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작성일		작 성 자	직위 :	성명:	(인)
-----	--	-------	------	-----	-----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물품 검수(사) 조서

(앞장)

물 품 검 수(사) 조 서

계약 건명			
품명 수량			
구입처	상호		성명
계약금액	금원(금원)		
계약체결년월일	년 월 일		
납품기한	년 월 일		
납품년월일	년 월 일		
검수(사)년월일	년 월 일		
검수(사)장소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 00팀 선수 ①

검수자 : 00팀 감독 ①

(뒷장)

검수내역서

물품 검수 사진

00팀 00 구매 검수 사진

○ 일시 : 년 월 일

○ 장소 :

00팀 훈련 용품 수령 확인증

00팀 수령 확인증

NO	직위	성명	수령내역	서명	비고
1			○		
2			○		
3			○		
4			○		
5			○		
6			○		
7			○		
8			○		

상기 물품을 수령 합니다.

년 월 일

○ 팀 명:

○ 직 위:

○ 성 명:

(서명)

[별지 제18호 서식]

담당	과장	부장	사무처장	회장

사직서

사직인	성명	
	생년월일	
	팀명/직위	
	담당업무	
	입사일	
	퇴직일	
	주소	
	연락처	

사직사유

- ○ ○ ○ ○ ○

본인은 상기와 같이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본인 : (인)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별지 제19호 서식]

응시원서

※ 응시번호	기재 금지	응시분야	
--------	-------	------	--

인 적 사 항	성명	(한글)		휴대폰	
		(한자)			
	생년월일				
	현주소	(우:)			
	e-Mail				

응 시 표	성명		※응시번호	기재 금지
		응 시 분 야		
년 월 일				
경상북도체육회장				

주 의 사 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 여부와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면접 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 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내려 받아 한글(국문)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워드프로세서 및 자필 모두 가능)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성요령》

- ① 「※」 표시되어있는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②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 합니다.
- ③ 연락처 :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합니다.

이 력 서

성명	한글		생년월일	(만 세)
	한자		병역사항	군필, 면제
현주소				
연락처		주택 :	휴대폰 :	
최종학력				
선수 경력	기간(년 월)		소속	비고
	. . ~ . .()			입상실적 기재
	. . ~ . .()			
	. . ~ . .()			
지도 경력	기간(년 월)		소속	직책(감독·코치 등)
	. . ~ . .()			입상실적 기재
	. . ~ . .()			
	. . ~ . .()			
경기 지도자 자격	취득년월일	자격 · 면허증		시행처
수상	년월일	종류		시행(발령)
		※ 대한민국 체육상, 훈·포장 이상 기재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이력서 작성요령

1. 이력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내려 받아 한글(국문)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워드프로세서 및 자필 모두 가능)
2. 이력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3. 『이력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성요령』

구분	작성 항목별	작 성 요 령	비고
1	성명 생년월일	⇒ 성명은 한글 및 한자로 기재하고 생년월일은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2	주소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합니다.	
3	연락처	⇒ 연락처는 각종 통보 시 활용되므로 반드시 실제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기재 합니다. (휴대폰→자택 순임)	
4	학력	⇒ 최종학력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고, 졸업 구분란에는 졸업·졸업 예정·중퇴 등으로 기재 합니다. (대학원 이상일 경우 대학도 기재)	
5	경력	⇒ 응시 자격 기준 관련 지도자와 선수경력은 꼭 기재하고,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해당 분야 주요경력을 위주로 기재합니다.	
6	자격	⇒ 응시 해당 분야 자격증을 위주로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7	수상	⇒ 주요 수상 내용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21호 서식]

자기소개서

※응시번호	기재 금지	응시분야	
성명			

※ 작성요령

- 응시분야에 대한 경력 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
 - 응시분야에 대한 소견, 응시취지, 업무수행 방향 등 기재

※ 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로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직접 작성
(글자크기 13, 줄간격 160%, 쪽번호)

* 작성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경상북도체육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 가.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 사항, 자격·면허 소지 사항
나. 수집 및 이용목적
- 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II.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자격번호 등
나) 수집 및 이용목적 : 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00팀 운영능력 계획서

※ 응시번호	기재 금지	응시분야	
성명			

년	월	일	작성자 : (인)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합니다.
 - 00팀 운영계획(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과
 -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합니다.
- 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로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직접 작성
(글자크기 13, 줄간격 160%, 쪽번호)

[별지 제24호 서식]

대장 관리(자산취득) 장비 훈련

四〇